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74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영진 · 김준혁 · 서삼석
노종면 · 이연희 · 조인철
윤종균 · 백혜련 · 이해식
염태영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을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낙찰자”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찰보증금)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u>낙찰자가</u>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u>입찰보증금을</u>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낙찰자</u> 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보증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낙찰자</u> 또는 <u>낙찰예정자(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u>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u> ----- ----- -. ----- ----- <u>낙찰자</u> 또는 <u>낙찰예정자</u> ----- ----- ----- ----- ----- 1. <u>낙찰자가</u> <u>정당한 이유 없이</u> <u>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u> 2. <u>낙찰예정자가</u> <u>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u>
<신 설>	
<신 설>	

<u><신 설></u>	<u>지 아니한 경우</u> <u>3. 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u> <u>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